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027

발의연월일 : 2026. 11. 20.

발 의 자 : 백종헌·윤재옥·김상훈
김기웅·이소희·박충권
이성권·이헌승·고동진
김예지·유영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산물 등 자연상태식품의 기능성·질병 예방 표시·광고는 가능하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과학적·객관적인 영업자 입증 의무(실증) 등 별도의 사후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검증이 안된 무분별한 농산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피해 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아울러, 자연상태식품에 기능성·질병 예방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사항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의 별표에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정보 확인을 위한 접근성에 제한이 있고, 법률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이에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부당한 표시·광고 적용 제외 대상의 기본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자연상태식품에 본래 함유되지 아니한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표시·광고의 경우 객관적·과학

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만 농산물 등 자연상태식품의 표시·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의 광고의 정의만으로는 신종 광고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광고의 정의를 판매 촉진의 목적이 있는 경우로 명확화하여 신종 광고 행위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

법률 제 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광고”란”을 ““광고”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2.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는 자연상태식품에 함유된 성분에 대한 표시·광고. 다만, 자연상태식품에 본래 함유되지 아니한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표시·광고의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11.·12. (생 략)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9. (현행과 같음) 10. “광고”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 11.·12. (현행과 같음)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2.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37

	조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는 자연상태식품에 함유된 성분에 대한 표시·광고. 다만, 자연상태식품에 본래 함유되지 아니한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표시·광고의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